

# 정 관

[서식정비 2025. 6. 1. BR-A1v1]

주식회사 보령

---

# 목 차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상호]
- 제 2 조 [목적]
-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제 4 조 [공고방법]

## 제 2 장 주식

-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 제 6 조 [일주의 금액]
- 제 7 조 [주식의 종류]
- 제 7 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제 8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 제 9 조 [신주인수권]
- 제 9 조의 2 [삭제]
- 제 9 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 제 10 조 [삭제]
- 제 10 조의 2 [신주의 배당기산일]
- 제 11 조 [명의개서대리인]
- 제 12 조 [삭제]
- 제 13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제 3 장 사채

- 제 14 조 [사채의 발행]
- 제 14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

제 14 조의 3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 16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 제 4 장 주주총회

제 17 조 [소집시기]

제 18 조 [소집권자]

제 19 조 [소집통지 및 공고]

제 20 조 [소집지]

제 21 조 [의장]

제 22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제 23 조 [주주의 의결권]

제 24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제 25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제 26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 27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제 28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 제 5 장 이사, 이사회, 감사

제 29 조 [이사 및 감사의 수]

제 30 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제 29 조 [이사 및 감사의 수]

제 31 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 32 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제 33 조 [대표이사등의 선임]

제 34 조 [대표이사의 직무]

제 34 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제 34 조의 3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제 35 조 [감사의 직무]

제 36 조 [감사의 감사록]

제 37 조 [이사회 의 구성과 소집]

제 37 조의 1 [위원회]

제 38 조 [이사회 의 결의방법]

제 39 조 [이사회 의 의사록]

제 40 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 41 조 [상담역 및 고문]

## 제 6 장 계산

제 42 조 [사업연도]

제 43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의 작성·비치등]

제 43 조의 2 [외부감사인 의 선임]

제 44 조 [이익금 의 처분]

제 44 조의 2 [삭제]

제 45 조 [이익배당]

제 45 조의 2 [중간배당]

제 46 조 [배당금 지급청구권 의 소멸시효]

## 부칙

### 조문별 근거 법규등 정리표

---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보령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Boryung Corporation 이라 표기한다.

### 제 2 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약품의 제조, 매매 및 소분업
2. 무역업
3. 무역대리업
4.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5. 독극물 제조 및 매매업
6. 원료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등의 제조, 매매 및 소분업
7. 의료기기 및 위생용품의 제조, 매매 및 소분업
8. 식품,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청량음료 등의 제조, 매매 및 소분업, 식품가공업
9. 건강보조식품 및 의약품 가공 수탁, 제조시설 및 기구 임대업
10. 효소제제 제조판매업
11. 자동차 운전학원 운영업
12. 각종물품 제조 및 도·소매업
13. 생활 필수품 판매업
14. 의류 봉제 판매업
15. 보세 판매업
16. 기술계 학원 운영업
17. 백신제제 판매업
18. 정보처리대행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판매업
19. 종합유선방송 및 관련부대사업

- 
20. 방문판매업, 통신판매업, 인터넷전자상거래업
  21. 환경정화용품, 세제의 제조 및 도·소매업
  22.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및 수입업, 유통전문판매업
  23. 사료의 제조판매업, 도매업 및 수출입업
  24. 동물약품 등 (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의 제조판매업, 도매업 및 수출입업
  25. 건설업
  26.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27. 의약품개발 용역 및 연구업
  28. 전각호의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및 투자

###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 제 4 조 [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oryung.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 2 장 주 식

###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 할 주식의 총수는 이익주로 한다.

### 제 6 조 [일주의 금액]

---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 제 7 조 [주식의 종류]

- ① 이 회사가 발행 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으로 한다.

### 제 7 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일백만주로 한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하여 년 9%이상 13%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 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2 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8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제 9 조 [신주인수권]

- ① 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② 제 1 항 제 3 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제 1 호, 제 2 호, 제 2 호의 2,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

---

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9 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제 1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⑦ 회사는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제 9 조의 2 [삭 제]

### 제 9 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 30 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의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 8 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3. (삭 제)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 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 10 조 [삭제]****제 10 조의 2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 11 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 [삭제]****제 13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

## 제 3 장 사 채

### 제 14 조 [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제 14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사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2 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4 조의 3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사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2 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6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1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 4 장 주주총회

#### 제 17 조 [소집시기]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 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제 18 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 34 조 제 5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9 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동아일보와 한국경제신문에 2 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 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0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또는 지점(충청남도 예산군)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1 조 [의 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 34 조 제 5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2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기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3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의결권 있는 주식 1 주마다 1 개로 한다.

---

**제 24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5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6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8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감사****제 29 조 [이사 및 감사의 수]**

- 
- ① 회사의 이사는 3 명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 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② 회사의 감사는 2 명이내로 하되 그중 1 명은 상근으로 한다.

### 제 30 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③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상법 제 382 조의 2 규정에 의한 집중투표제를 적용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 31 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 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 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제 32 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 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 29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임기는 제 31 조 2 항에 따른다.

③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 29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33 조 [대표이사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서 이사 중에서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필요에 따라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 제 34 조 [대표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 삭 제 >
- ③ < 삭 제 >
- ④ 대표이사가 수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 ⑤ 대표이사의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순서 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34 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 ① 이사는 3 월에 1 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4 조의 3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 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 397 조(경업금지), 제 397 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상법 제 398 조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35 조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 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 할 수 있다.
- ④ 제 3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제 36 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제 37 조 [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 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lt; 삭 제 &gt;

④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7 조의 1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따라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
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38 조 [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 398 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 39 조 [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0 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 41 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제 6 장 계 산

#### 제 42 조 [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43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를 승인 할 수 있다.

1. 제 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 
- ④ 제 3 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의일의 1 주전부터 본사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⑥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 3 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상태표와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 43 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 44 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제 44 조의 2 [삭 제]

#### 제 45 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 1 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 45 조의 2 [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매년 6 월 30 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상법 제 462 조의 3 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 1 항의중간배당은 이사회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 1 항의 기준일 이후 45 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연도개시일 이후 제 1 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 46 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부칙 <BR-A1v1, 2025.6.1.>**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5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규정외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기타 법령 및 이사회 의 결의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2022 년 3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2. (규정외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기타 법령 및 이사회 의 결의에 따른다.

(서명날인 생략)

**부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2022 년 3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1963 년 11 월 06 일 제정

1966 년 02 월 14 일 개정

1967 년 05 월 30 일 개정

1967 년 10 월 11 일 개정

1967 년 12 월 10 일 개정

1971 년 11 월 05 일 개정

1972 년 11 월 27 일 개정

1973 년 04 월 20 일 개정

---

1974 년 04 월 26 일 개정  
1975 년 02 월 15 일 개정  
1976 년 02 월 26 일 개정  
1976 년 07 월 05 일 개정  
1977 년 03 월 23 일 개정  
1979 년 08 월 29 일 개정  
1979 년 09 월 17 일 개정  
1980 년 07 월 19 일 개정  
1981 년 02 월 27 일 개정  
1981 년 07 월 14 일 개정  
1982 년 02 월 27 일 개정  
1983 년 07 월 30 일 개정  
1984 년 02 월 28 일 개정  
1985 년 12 월 06 일 개정  
1988 년 06 월 30 일 개정  
1989 년 02 월 28 일 개정  
1990 년 02 월 28 일 개정  
1992 년 02 월 28 일 개정  
1993 년 03 월 12 일 개정  
1994 년 03 월 11 일 개정  
1995 년 03 월 10 일 개정  
1996 년 03 월 08 일 개정  
1997 년 03 월 14 일 개정  
1998 년 03 월 13 일 개정  
1999 년 03 월 12 일 개정  
2000 년 03 월 10 일 개정  
2001 년 03 월 16 일 개정

2002 년 03 월 15 일 개정  
2003 년 03 월 14 일 개정  
2004 년 03 월 12 일 개정  
2005 년 03 월 11 일 개정  
2006 년 03 월 17 일 개정  
2008 년 03 월 14 일 개정  
2009 년 03 월 13 일 개정  
2010 년 03 월 12 일 개정  
2011 년 03 월 18 일 개정  
2012 년 03 월 16 일 개정  
2013 년 03 월 15 일 개정  
2014 년 03 월 14 일 개정  
2016 년 03 월 25 일 개정  
2018 년 03 월 23 일 개정  
2019 년 03 월 22 일 개정  
2020 년 03 월 20 일 개정  
2021 년 03 월 26 일 개정  
2022 년 03 월 25 일 개정  
2025 년 03 월 31 일 개정

## [조문별 근거법령 정리표 (2025. 6. 1. 기준)]

| 조문                                     | 근거법령                                  |
|--|---------------------------------------|
| 제 1 조 (상호)                             | 상법 제 289 조 제 1 항 제 2 호                |
| 제 2 조 (목적)                             | 상법 제 289 조 제 1 항 제 1 호                |
|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상법 제 289 조 제 1 항 제 6 호                |
| 제 4 조 (광고방법)                           | 상법 제 289 조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 제 6 항 |
|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 상법 제 289 조 제 1 항 제 3 호                |
| 제 6 조 (일주의 금액)                         | 상법 제 289 조 제 1 항 제 4 호                |
| 제 7 조 (주식의 종류)                         | 상법 제 344 조                            |
| 제 7 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상법 제 344 조, 제 344 조의 2, 제 344 조의 3    |
| 제 8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 상법 제 356 조의 2                         |
| 제 9 조 (신주인수권)                          | 상법 제 418 조                            |
| 제 9 조의 2 (삭제)                          | -                                     |
| 제 9 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 상법 제 340 조의 2, 제 340 조의 3, 제 340 조의 4 |
| 제 10 조 (삭제)                            | -                                     |
| 제 10 조의 2 (신주의 배당기산일)                  | -                                     |
| 제 11 조 (명의개서대리인)                       | 상법 제 337 조 제 2 항                      |
| 제 12 조 (삭제)                            | -                                     |
| 제 13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상법 제 354 조                            |
| 제 14 조 (사채의 발행)                        | 상법 제 469 조                            |
| 제 14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 상법 제 513 조 내지 제 516 조                 |

|  |                             |
|--|-----------------------------|
| 제 14 조의 3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5 조 |
|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상법 제 516 조의 2               |
| 제 16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 -                           |
| 제 17 조 (소집시기)                              | 상법 제 365 조, 제 366 조         |
| 제 18 조 (소집권자)                              | 상법 제 366 조                  |
| 제 19 조 (소집통지 및 공고)                         | 상법 제 363 조                  |
| 제 20 조 (소집지)                               | 상법 제 364 조                  |
| 제 21 조 (의장)                                | 상법 제 366 조의 2               |
| 제 22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상법 제 366 조의 2               |
| 제 23 조 (주주의 의결권)                           | 상법 제 369 조 제 1 항            |
| 제 24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 상법 제 369 조 제 3 항            |
| 제 25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상법 제 368 조의 2               |
| 제 26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상법 제 368 조 제 2 항            |
| 제 27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 상법 제 368 조 제 1 항            |
| 제 28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 상법 제 373 조                  |
| 제 29 조 (이사 및 감사의 수)                        | 상법 제 383 조, 제 409 조         |
| 제 30 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상법 제 382 조, 제 409 조         |
| 제 31 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 상법 제 383 조, 제 410 조         |
| 제 32 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 상법 제 385 조, 제 410 조         |
| 제 33 조 (대표이사등의 선임)                         | 상법 제 389 조                  |
| 제 34 조 (대표이사의 직무)                          | 상법 제 389 조                  |
| 제 34 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 상법 제 393 조 제 4 항            |
| 제 34 조의 3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상법 제 399 조, 제 400 조         |
| 제 35 조 (감사의 직무)                            | 상법 제 412 조                  |

|                                |                                 |
|--------------------------------|---------------------------------|
| 제 36 조 (감사의 감사록)               | 상법 제 413 조의 2                   |
| 제 37 조 (이사회의 구성과소집)            | 상법 제 390 조, 제 391 조             |
| 제 37 조의 1 (위원회)                | 상법 제 393 조의 2                   |
| 제 38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상법 제 391 조                      |
| 제 39 조 (이사회의 의사록)              | 상법 제 391 조의 3                   |
| 제 40 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상법 제 388 조, 제 415 조             |
| 제 41 조 (상담역 및 고문)              | -                               |
| 제 42 조 (사업연도)                  | 상법 제 446 조의 2, 제 447 조          |
| 제 43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 비치등) | 상법 제 447 조, 제 447 조의 2, 제 448 조 |
| 제 43 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0 조      |
| 제 44 조 (이익금의 처분)               | 상법 제 462 조                      |
| 제 44 조의 2 (삭제)                 | -                               |
| 제 45 조 (이익배당)                  | 상법 제 462 조                      |
| 제 45 조의 2 (중간배당)               | 상법 제 462 조의 3                   |
| 제 46 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                               |